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제3.2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상품이 제3.3조 또는 제3.4조 또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그 상품, 또는
-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국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2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성 제품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뿔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또는 그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상품
-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로 상품과 그 밖의 해양 상품,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국제법¹상 그러한 수역, 해저, 그리고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할 권리²가 있어야 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고/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아.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 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상품

1. 제3.1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 라 한다)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 중 한가지이다.³

- 가. 직접법/집적법

¹ 이 호의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² 양 당사국은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이 호의 “권리”는 당사국과 그 연안국의 정부 간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민간 기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그 밖의 약정에서 비롯되는 연안국의 어로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을 양해한다.

³ 양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의 원산지재료비용, 노무비, 간접비, 이윤과 그 밖의 비용의 가치를 포함한다.

- 1) 재료비용은 그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 2)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 3) 간접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그리고,
- 4) 그 밖의 비용은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 상품을 적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한다.

또는

나. 간접법/공제법

$$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 2)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이 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제1항과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관련 품목별원산지규정의 목적상,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4.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4조 품목별원산지규정

제3.1조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은 그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5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이 한반도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져 그 이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6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⁴

제3.7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이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⁴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 그 시점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효중인 경제통합 협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 다. 단순한⁵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공정
- 아. 단순한⁵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⁶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⁷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 너. 동물의 도살⁸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⁵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HS 0801.32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⁷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화학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⁸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제3.8조 직접 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의 모든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3.10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된다.
 - 나. 상품이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 외의 기준의 대상이 된다면,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11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는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함께 관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제3.12조 중립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 가. 연료 및 에너지
- 나. 공구, 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3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인지 여부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사용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이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된다.

제2절
원산지 절차

제3.14조
원산지 증명서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은, 제3.17조에 명시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 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으로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 가. A4 크기의 용지에 부속서 3-다의 첨부1 서식으로 인쇄된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할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3-다의 첨부2 서식을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되는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한장의 원본과 두장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제2사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이 보관한다.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한다.
 - 다.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물에 있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 라.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인쇄된다.
 - 마. 수출되는 탁송물에 해당하는 그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을 포함한다. 그리고,
 - 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부여 받은 고유한 일련의 참조번호를 포함한다.

4.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⁹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 국내 법령에 따른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6.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발급 당국에 발급 당국이 보관 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의 12번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다.

7.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변경 시에는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필요한 추가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에 의하여 승인 되고 발급 당국에 의하여 인증 받는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당국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한다.

제3.15조 발급 당국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당국 이름과 인장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당국의 이름과 인발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3. 등록부에 대한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후 또는 그러한 통보에 명시된 더 늦은 날에 발효된다.
4. 각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이, 명시된 대로, 수출되는 탁송물과 일치할 것, 그리고,
 - 나.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한 일련의 참조번호를 포함할 것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3근무일”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한다.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 나. 제2항가호에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3.14조에 기술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그리고
 -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3. 원산지 증명서는 그 발급일 후 1년 동안 유효하다.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

제3.17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당사국은 수입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8조 기록유지요건

1. 검증 과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을 위한 증빙 기록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그러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된다.
4.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에 의하여 제공되고 적절한 정부 당국에 의하여 인증된다.
5. 양 당사국 간 교환된 모든 정보는 제4.6조(비밀유지)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고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제3.19조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의 처리**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2.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원산지 증명서상의 사소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 원산지 증명서가 수용될 수 없도록 한 오류를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3.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 후 30일 이내에 제3.14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적절한 수정본을 제출하거나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발급된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4. 수입자가 제3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수정본이나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3.21조에 따라 검증의 수행을 진행할 수 있다.
5.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상에 다수의 품목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품목들 중 하나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산지 증명서에 열거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아니 한다.

제3.20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¹⁰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사후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 검증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서를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 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 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요청 당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하여 그 요청의 접수 확인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 다. 사후 검증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신속하게 그 요청에 응답하고 그 요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입 당사국은 사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 마.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검증 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후 검증의 전 과정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10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사후 검증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1항라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¹⁰ 한국의 경우, 이 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의 목적상 “발급 당국”은 한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관세 당국을 지칭한다.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 2)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 당국
-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관세 당국, 그리고
-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제4항가호에서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 당국의 이름
- 2)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 3) 제안된 검증방문 날짜
- 4) 검증대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

다. 수입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라. 제4항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검증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원산지 증명서에서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마. 통보를 받은 발급 당국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증방문은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 당국에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6. 정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제5항에 언급된 서면 결정서에 따라 복원된다.

7.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나 추가 정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가 관련 발급 당국에 통지된다.

8. 최초의 검증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실제방문과 그러한 검증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제5항의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는 관련 발급 당국에 통보된다. 검증절차가 수행되는 동안, 제1항마호가 적용된다.

제3.22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3조 직접 운송의 이행

제3.8조 이행의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 증명서
- 다.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 라. 제3.8조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3.2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3.8조와 제3.2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25조 이행

양 당사국은 인증수출자제도에 있어서 국내 이행 절차의 발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원산지 증명서 외의 원산지증명방식을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제3절 정의

제3.26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하더라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 당국이란 이 장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재료란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및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비원산지 상품이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품목별원산지규정이란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텃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